

##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변경 내용을 공시합니다.

■ 대상 투자신탁 :

No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1	HDC 알짜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96248

■ 주요 변경 내용 :

- 환매수수료 삭제
- 종류C-I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재무정보 업데이트

■ 변경 시행일 : 2018년 7월 30일

■ 변경 대상 서류 : 규약,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및 해당 판매회사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www.hdcasset.com](http://www.hdcasset.com)) 및  
해당 판매회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대비표

### [규약]

정정 전	정정 후
<p><b>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등)</b></p> <p>①~②&lt;생략&gt;</p> <p>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8. &lt;생략&gt;</p> <p>9. 종류C-I 수익증권: 최초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lt;개정2018.04.19&gt;</p> <p>10.~14. &lt;생략&gt;</p>	<p><b>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등)</b></p> <p>①~②&lt;현행과 동일&gt;</p> <p>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8. &lt;현행과 동일&gt;</p> <p><b>9. 종류 C-I 수익증권 : 최초 납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lt;개정 2018.04.19&gt;</b></p> <p><b>&lt;개정 2018.07.30&gt;</b></p> <p>10~14. &lt;현행과 동일&gt;</p>
<p><b>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b></p> <p>①~④&lt;생략&gt;</p> <p>⑤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p> <p>1.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p> <p>2.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b>제25조의2(수익증권의 전환)</b></p> <p>①~④&lt;현행과 동일&gt;</p> <p>⑤&lt;삭제&gt; <b>&lt;개정 2018.07.30&gt;</b></p>
<p><b>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b></p> <p>①~②&lt;생략&gt;</p> <p>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환매대금에서 <u>환매수수료</u>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p>	<p><b>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b></p> <p>①~②&lt;현행과 동일&gt;</p> <p>③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b>&lt; 개정 2018.07.30&gt;</b></p>
<p><b>제41조(환매수수료)</b></p> <p>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p>	<p><b>제41조(환매수수료)</b></p> <p><b>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b></p> <p><b>&lt;개정 2018.07.30&gt;</b></p>

<p>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90일 미만 : 이익금의 1%</li> <li>2. 90일 이상 : 환매수수료 없음</li> </ol> <p>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b>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b></p> <p>①~③&lt;생략&gt;</p> <p>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b></p> <p>①~③&lt;현행과 동일&gt;</p> <p>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lt;개정 2018.07.30&gt;</p>
<p><b>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b></p> <p>①~②&lt;생략&gt;</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p> <p>④&lt;생략&gt;</p>	<p><b>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b></p> <p>①~②&lt;현행과 동일&gt;</p> <p>③&lt;삭제&gt; &lt;개정 2018.07.30&gt;</p> <p>④&lt;현행과 동일&gt;</p>
<p>&lt;신설&gt;</p>	<p>&lt;부칙12&gt;</p> <p>(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p>

[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I.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환매수수료	90일미만환매시: 이익금의 1% 90일이상환매시: 환매수수료없음	환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운용전문인력 4.투자실적 추이	2018.04.02기준 2017.06.26기준	2018.07.02기준 2018.06.26기준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b>11.15%</b> 이며, 이는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부여시 3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낮게 산출되었으나 집합투자업자는 보수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b>2등급(높은위험)</b> 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b>12.14%</b> 이며, 이는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부여시 3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낮게 산출되었으나 집합투자업자는 보수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b>2등급(높은위험)</b> 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추가
5.운용전문인력 가.책임운용전문인력 : 운용현황	2018.04.02 기준	2018.07.02 기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종류형 구조 - 종류 C-I 가입자격	최초 납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최초 납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b>11.15%</b> 이며, 이는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부여시 3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낮게 산출되었으나 집합투자업자는 보수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b>2등급(높은위험)</b> 으로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b>12.14%</b> 이며, 이는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부여시 3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낮게 산출되었으나 집합투자업자는 보수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b>2등급(높은위험)</b> 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부여하였습니다.
11.매입,환매,전환절차 및 기준가 격 적용기준 가.매입 (2)종류별 가입자격	9.종류C-I수익증권: 최초 납입금 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9.종류C-I수익증권: 최초 납입금 액이 5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 인
11.매입,환매,전환절차 및 기준가 격 적용기준 나.환매 (3)환매수수료	90일미만환매시: 이익금의 1% 90일이상환매시: 환매수수료없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 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1.매입,환매,전환절차 및 기준가 격 적용기준 다.전환	⑤집합투자규약 제41조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환매수 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삭제>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 수수료 - 환매수수료	90일미만환매시: 이익금의 1% 90일이상환매시: 환매수수료없음	없음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17.06.26기준	2018.06.26기준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2.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12기(2017.06.26)기준	제13기(2018.06.26)기준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연평균수익률 나.연도별 수익률 추이 다.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제12기(2017.06.26)기준 제12기(2017.06.26)기준 2017.06.26 기준	제13기(2018.06.26)기준 제13기(2018.06.26)기준 2018.06.26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2018.04.02기준	2018.07.02기준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 전	정정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환매수수료	90일미만환매시: 이익금의 1% 90일이상환매시: 환매수수료없음	환매수수료: 해당사항없음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운용전문인력 4.투자실적 추이	2018.04.02기준  2017.06.26기준	2018.07.02기준  2018.06.26기준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b>11.15%</b> 이며, 이는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부여시 3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낮게 산출되었으나 집합투자업자는 보수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b>2등급(높은위험)</b> 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은 <b>12.14%</b> 이며, 이는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 부여시 3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펀드는 "수익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낮게 산출되었으나 집합투자업자는 보수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b>2등급(높은위험)</b> 으로 부여하였습니다.